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80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백혜련 · 이수진 · 홍기원
서삼석 · 김영환 · 안태준
남인순 · 장종태 · 부승찬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산후조리원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의2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제적 이익등
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3(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산후조리원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26조(벌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15조의23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u>

<u>4.</u> (생략) ② · ③ (생략)	<u>정한다.</u>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